

소매물가지수지침

1 9 7 4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차 례

1 . 물가의 의미	3
2 . 조사품목	6
3 . 품질규격 및 단위	7
가 . 품질규격	7
나 . 품질규격 변경	8
다 . 단 위	9
4 . 조사지역 및 대상처	9
가 . 조사지역	9
나 . 대상처	10
다 . 대상처 선정기준	10
라 . 보조대상처	10
마 . 대상처 변경	11
5 . 조사시점	12
6 . 조사방법	12
7 . 조사요령	12
8 . 품질품목처리	13
9 . 조사표류 기입요령	14
가 . 소매가격표	14
나 . 영화관람료 확인서	15

다. 방세 조사표	16
라. 납입금 확인서	17
10. 조사표류 발송	17
가. 조사표 발송	17
나. 질의 조회 응신	18
11. 명부 작성	18
가. 가격 조사부	18
나. 대상처 명부	18

1. 물가의 의의

오늘날의 교환경제에서는 모든 상품의 가치는 화폐로서 표시되고 있다. 화폐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화폐의 구매력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화폐의 구매력이라 함은 화폐 한 단위가 교환에 있어서 획득할 수 있는 물자와 서어비스의 수량을 의미한다. 화폐의 구매력은 일차적으로는 단일상품의 가격에 의하여 측정할 수가 있으며 나아가서는 일체의 상품의 가격을 종합함으로써 올바르게 나타낼 수가 있다.

그리하여 특정의 개별상품의 가치를 화폐단위로서 표시된 것을 그 상품의 가격이라 하고 국민경제 내부에 있어서의 여러가지 상품의 가격을 종합한 것을 물가 또는 물가수준이라 한다.

화폐의 구매력은 물가수준의 역수로서 표현되고 화폐의 구매력의 변동은 물가수준의 변동에 의하여 판정된다. 이러한 물가수준의 변동은 물가지수로서 표시되는데, 물가지수는 일정시점의 물가를 기준(=100)으로 하여 비교시점의 물가를 백분율로서 표시한 것이다. 화폐 소득이 일정한 경우에는 물가수준의 변동에 따라 실질소득은 변동하게 된다. 물가지수가 상승하면 화폐의 구매력 감퇴에 의하여 국민 경제생활은 궁핍하게 되고 반대로 물가지수가 하락하면 화폐의 구매력은 증가하여 국민경제생활은

충족하게 된다. 결국 화폐소득에 대응하는 물가수준의 변동은 국민경제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가격은 상품의 유통과정에 있어서 거래단계에 따라 일반적으로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으로 구분되고 종합적으로는 도매물가와 소매물가로 구별된다. 도매가격이란 상품이 생산자로부터 소매상에 이르는 단계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하며 거래단계별로 몇개의 도매가격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고 생산자로부터 도매상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소매상에 거래되는 경우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산출하고 있는 도매물가지수를 위한 가격 자료로 쓰고 있는 도매가격은 제1단계의 거래에서 집약적으로 거래되는 가격 (Primary market price)을 의미한다. 소매가격은 거래의 최종단계에서 소매상이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

유통구조가 선진국과 같이 근대화되어 있고 유통질서가 확립되어 있다면 제1차 도매가격에서 최종 소매가격에 이르는 유통과정의 폭이 좁아지고 유통마진은 적정수준에서 결정되어 물가는 안정되며 나아가서는 국민 경제생활에 도움을 준다. 반대로 오늘날과 같이 유통구조가 복잡내지 무질서한 경우에는 거래단계별 가격질서가 문란하여 단계적 물가수준의 변동을 정확히 포착할 수가 없게 되고 따라서 그만큼 국민 경제생활도 불안정하게 된다.

한편 소매물가와는 개념상 비슷한 것으로 소비자물가를 들 수

있다.

소비자물가란 소비자가 그들의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매상으로 부터 구입하는 상품의 가격과 서어비스 요금을 종합된 것으로서 직접 가게에서 지출한 수량과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양자의 차이는 전자가 소매상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취하는 입장에 있음에 반하여, 후자는 서어비스 요금을 포함하여 실제로 소비자가 가게소비지출 계정에서 상품 구입을 위하여 지불하는 가격을 취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다. 예컨대, 기계류등을 위시한 완전생산재에 있어서는 소매가격은 형성되나 가게에서 구입하는 소비자 가격은 이루어 질 수 없으며 한편 서어비스 요금은 소매상에서 판매하는 소매가격의 범주에는 속하지 않는다. 결국 소매물가는 유통단계를 중심으로한 개념이고 소비자 물가는 가게소비지출을 중심으로한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같이 양자를 개념적으로 구별하는 이유는 소비자 물가지수 편제상의 실제적 필요에 기인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편제, 공표하고 있는 서울 및 전 도시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용되는 가격자료는 소매가격 및 서어비스 요금인바, 여기서 말하는 소매가격은 소매상이 판매하는 가격(훗가)이 아니고 소매상으로 부터 실제로 구입하는 가격과 서어비스 요금을 의미하고 그것은 개념상 소비자 가격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수편제에 있어서는 동질의 가격계열이 요구되는데, 소비자 구입가격만을 추적 한다는 것은 동일 가구안에서의 소비지출의 품목과 구성비가 시계열 선상에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조사기술면에 있어서도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서는 계속적으로 정확한 가격자료를 얻을 수 없으므로, 소매상의 판매가격과 소비자의 구입가격은 동일하다는 가정 아래서 편의상 소매 가격을 포착하여 소비자 물가지수 편제의 가격자료로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의 소매가격자료는 실제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개념상의 소비자물가에 접근하는 가격으로 조사 수잡된 것이라야 한다.

2. 조사품목

도시가계 지출중 비중이 큰 품목으로서 지출구성비가 $\frac{1}{10,000}$ 이상되며 가격변동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338개 품목을 선정하였다.

도시별 조사 품목수

도 시	총품목수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비	피복비	잡비
전 도시	338	123	54	7	54	100
서울	331	120	54	6	54	97
부산	322	118	45	7	54	98
대구	319	118	45	6	54	96
인천	318	117	45	6	53	97
대전	318	117	46	6	54	95
광주	315	115	44	6	54	96
전주	317	116	46	6	54	95
춘천	309	115	42	6	53	93
청주	307	110	45	6	54	92
기타시	321	118	47	6	54	96

3 . 품질규격 및 단위

가 . 품질규격

1) 가격제설의 동질성이 절대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므로 품목별 조사 가격의 결정적 요소인 품질규격을 확정시켜 계속적으로

동일한 품질규격에 의한 가격조사를 하여야 한다.

2) 상품의 질, 크기, 무게, 모양, 생산지, 상표 등 그 상품의 단위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품질규격 선정 기준을 고려하여야 된다.

가) 소비자가 가장 많이 소비하는 규격

나)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한 규격

다) 생산량이 많은 규격

라) 시장출회가 많은 규격

마)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규격

바) 조사 지역별로 특수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다량 출회 소비되는 규격으로 상표를 지정한다.

나. 품질규격 변경

이미 지정된 품질규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다음의 경우 "품질규격 변동보고서"를 중앙에 제출하고 신.구 품질규격의 가격을 3회 조사보고하여 별단의 지시가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보고 계속 신가격으로 조사한다.

1) 생산을 중단하는 경우

2) 생산양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예" (버닐봉지 제품이 캔 포장으로 된 경우)

- 3) 출회가 적어 가격의 대표성을 상실한 경우
- 4) 소비자 수요가 극소한 경우
- 5) 거래단위의 관습이 달라지는 경우

“예” (국수가 1근으로 거래되던 것이 1kg으로 변경되는 경우)

다. 단 위

소비자의 구매관습에 따라 일반적으로 거래 단위를 책정한 것이며 전국적으로 미터법에 의한 단위로 통일하였으나 거래 단위가 상이한 지역은 규정된 단위로 가격을 환산 하여야 한다.

“예”

- 1) 600g으로 책정된 쇠고기 1근을 375g으로 판매하는 지역에서는 600g으로 환산한 가격을 조사기입한다
- 2) 콩치의 단위가 10마리인데 6마리에 100원으로 거래된다면 환산하여 167원으로 조사기입하여야 한다.

4. 조사지역 및 대상처

가. 조사지역

서울을 비롯한 31개시에서 조사한다.

나. 대상처

조사대상 전품목을 조사할 수 있는 점포 또는 사업체를 선정하여 계속 조사하여야 한다.

다. 대상처 선정기준

- 1) 소비자 고객의 출입이 가장 많은 소매점포로서 가격의 대표성이 높고 계속적으로 조사가 가능한 점포
- 2) 타조사원과 중복된 점포는 제외하여야 한다.
- 3) 하나의 시장에 국한하지 말고 조사구역내에서 대표적점포를 선정한다.
- 4) 다음과 같은 점포는 조사대상처가 될 수 없다.
 - 가) 도매점포
 - 나) 도산매 점포로서 도매를 주로하는 점포
 - 다) 통신 판매점
 - 라) 중고품 판매점
 - 마) 영업상태가 불량한 점포
 - 바) 중앙에서 지정하지 않은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

라. 보조 대상처

보조대상처는 지정된 대상처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가격조사를 할 수 없을 경우 또는 대상점포의 특별한 사유로 이상가격

이 형성되는 경우에 참고가격을 조사하기 위하여 지정대상처 외에 몇개의 보조대상처를 정하여 활용한다.

- 1) 지정된 대상처에서 조사품목이 일시 품질일 때.
- 2) 지정된 대상처에서 조사품목의 품질규격이 달라졌을 때.
- 3) 지정된 대상처의 일시휴업.

나. 대상처 변경

다음의 경우에는 대상처 변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에 송부하고 신구가격을 3회 보고하여 별단의 지시가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본다.

- 1) 조사대상처가 폐업하는 경우
- 2) 조사대상처가 전업하는 경우
- 3) 조사품목을 취급하지 않게된 경우
- 4) 조사대상처의 상호 또는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 5) 조사대상처가 대표성을 상실한 경우 등 인데 신규대상처의 선정은 대상처 선정기준에 의함은 물론 지도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5. 조사 시 점

가. 순기별 조사

(매월 5, 15, 25일) : (영화관람료, 납입금, 방세를 제외한 326 품목)

나. 월별조사

(매월 5일) : 영화관람료 (2 품목)

다. 분기별 조사

(매분기 말월 5일) : 납입금, 방세 (10 품목)

조사일이 공휴일, 휴사일인 경우에는 조사일 전일에 조사하고 조사일이 명절(추석, 성탄절등)인 경우에는 2일전에 조사하되 앞당긴 조사일이 휴사일, 공휴일이면 다시 1일전에 조사한다.

예

1) 5일이 휴일이면 4일에 조사하고 4일이 명절이면 2일에 조사한다.

2) 25일이 명절이면 23일에 조사하고 23일이 휴일이면 22일에 조사한다.

6. 조사 방법

타계식 면접조사 방법에 의하여 가격을 조사한다.

7. 조사 요령

소매물가 조사는 면접조사이므로 응답자와의 인간관계가 원활

한 상태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조사원은 응답자에게 본조사의 목적과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시키고 다만 통계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납득시켜 응답자로 하여금 가벼운 마음으로 가격을 알려주도록 하여야 한다
가. 일정한 응답자를 상대로 가격을 조사한다.

나. 각메스콤을 통하여 사전에 물가에 관한 충분한 예비지식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다. 항상 조사구내의 시황에 밝아야 한다.

라. 품질규격을 숙지함은 물론 유사품종에 대하여도 많은 지식을 갖는다.

8. 품질 품목처리

다음의 경우에만 품질로 처리한다.

가. 계절적으로 완전히 시장거래가 형성되지 않을 경우

나. 생산이 중단되어 재고량이 품질되고 신제품이 생산되지 않을 경우

이외에 어떠한 경우에도 품질처리 하여서는 안되며 대상처에서 일시품질일 때는 조사구내의 타점포에서 조사하여 등락이 있을 때는 본 대상처의 전순가격에 등락율을 적용하여 가격을 책정하고 비교란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예) 갈치값이 전기에 100 원이었고 금기에 품질인 경우 보조대상처에서 조사하여 동일규격이 120 원이고 이점포의 가격이 전기와 변동이 없다면 같은 100 원으로 기입한다.

그러나 전기의 100 원에서 120 원이 되었다면 같은 추세로 보아 120 원으로 처리한다.

또한 기본규격과 (70 cm) 다른 규격의 갈치 (90 cm) 만 출회되고 있을때 전기 기본규격이 100 원이고 90 cm의 가격이 150 원이었는데 금기가격도 150 원이라면 금기조사 가격은 100 원이다. 그러나 금기 90 cm 가격이 180 원이라면 등귀비율이 같다고 보아 (100 원 $\times \frac{180}{150} = 120$) 120 원이 금기가격이다.

9. 조사표류 기입요령

가. 소매 가격표

1) 조사가 끝나면 가격원부에 의하여 가격을 이기하고 등락차액은 하락일 경우에만 차액앞에 △표를 하고 등락사유를 상세히 기입한다.

2) 환산가격을 기입할때는 원미만은 반올림하여 기입하고 그

내용을 비고란에 상세히 기입한다.

3) 조사표의 숫자는 숫자란의 높 정도의 크기로 아랫부분에 기입하고 정정할 때는 지우지 말고 두줄로 횡선을 긋고 날인한다

2	3	5	6			2	5
---	---	---	---	--	--	---	---

4) 조사표가 작성되었으면 누락 또는 오기되지 않았는지 철저히 하게 재검토하여야 한다.

5) 맨 후면의 물가동향란에는 시황과 물가동향 및 기타 참고사항을 상세히 기록한다.

나. 영화관람료 확인서

1) 극장명을 기입하고 개봉, 재개봉별로 해당란에 명기한다.

2) 품질규격에 맞는 영화명만을 기입하며 대작이나 쇼는 제외한다.

3) 방화외 외화를 명확히 구별하여 금액을 기록하며 특히 합작영화는 방화로 기록하여야 한다.

4) 상영일자에 중복 또는 누락이 없도록 한다.

5) 가격의 등락이 있는 경우에는 영화요금(입장세 포함) 이외에 각종 구호금이 포함되어있는지를 확인하여 그것이 포함되어있으면 제외 시킨다.

6) 1배의 조사표에 연기하여 조사한다.

다. 방세 조사표 /

1) 조사구 번호와 조사가구번호를 기입하고 반드시 가구주
성명을 기입한다.

2) 품질규격에 맞는 것만을 조사하여 방이 들어거나 점포가
부설된 것은 제외 시킨다.

3) 보증금과 매월 지불액란의 전기가격의 착오가 없도록 대
조 확인하여 기록한다.

4) 전분기와 금분기의 금액이 차이가 있으면 등락사유(새로
전입 또는 수리등)를 명백히 기입한다.

5) 삭월세의 경우 보증금 잔액은 매월 지불액의 3배를 제
한 금액임을 명심하여 정확히 기록토록 한다. 예컨대 50,000 원
보증금에 5,000 원의 삭월세(10개월)인 경우 다음 분기에는
보증금이 35,000 원이 된다.

6) 세의 종류가 동일가구안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특히 전
분기 가격에 착오가 없도록 한다. 예컨대 전분기에는 200,000 원
전세로 있다가 금분기에 100,000 원 보증금에 매월 5,000 원씩
지불하는 보증부월세로 변경되었다면 전분기에는 전세의 보증금란
에 200,000 원 금분기에는 보증부 월세의 보증금란에 100,000 원

매월 지불액란에 5,000 원을 각각 기록하고 그 변경사유를 등락 사유란에 명백히 기재한다.

7) 대상가구를 조사원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라. 납입금 확인서

1) 소정양식에 따라 기입하되 반드시 학교장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2) 국민학교 육성회비는 월별로 징수를 하지만 분기별 조사이므로, 분기별로 합산하여 기록하며 등급의 총화가 100이 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 중·고등학교의 납입금은 반드시 2학년을 기준으로 조사한다.

4) 중·고등학교 육성회비란의 A는 전액면제자 B는 전액납부자이므로 둘의 합계는 100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대학교 납입금은 자율적 경비의 내용에 특히 유의하여 조사시점마다 그 내역의 추가 또는 탈락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문과계(국문과 우선) 3년생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0. 조사 서류 발송

가. 조사표 발송

조사원은 조사시점 현재로 가격조사가 끝나면 지도원의 확인

을 받아 즉시 조사표를 중앙에 우송하여야 한다. 가격보고는 신속을 요하므로 조사원의 일신상 사유로 지연되어서는 안되며 조사원 유고시에는 지도원이 조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나. 질의조회 응신

1) 질의조회 응신서를 접수하면 접수 즉시 내용에 따라 재조사한다.

2) 질의조회 응신 기일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11. 명 부 작 성

가. 가격조사부(가격원부)

조사원은 우선적으로 가격조사부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이를 휴대하고 조사하여야 하며 품질규격 및 대상처 또는 지정상표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소정양식에 의거하여 중앙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으면 즉시 가격조사부를 정정 기입하여 조사에 착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대상처 명부

1) 조사대상처 명부

서식에 의거 명부를 작성하되 품목수의 합계가 당해 조사

구의 조사항목수와 일치하여야 한다.

2) 품목별 대상처 명부

조사표상의 품목순서대로 기입하되 당해 조사구에서 조사하는 품목만 기입함으로 대상처별 명부의 품목종수 및 대상처수는 일치되어야 한다. 대상처 명부는 2부작성하여 1부는 중앙에 송부하고 1부는 조사원이 비치한다.

부록 1

품 목 및 품 질 규 격

품 목 및 품 질 규 격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 위
10101	쌀 (일반미)	정미	8 kg (10ℓ)
10102	쌀 (방출미)	정부미 또는 농협방출미	8 kg (10ℓ)
10103	참 쌀	정미	8 kg (10ℓ)
10104	보리쌀(정맥)	쌀보리	7.65kg (10ℓ)
10105	보리쌀(입맥)	비닐봉지포장 3kg들이 (농협 제품)	1 포
10106	콩	백태	7.5 kg (10ℓ)
10107	팥	적두	8.33kg (10ℓ)
10108	녹 두	흑갈색	8.33kg (10ℓ)
10109	좁 쌀	차조	7.88kg (10ℓ)
10110	밀 가 루	중력분 2 등품, 제분율 77%, 22kg들이 (상표지정)	1 포
10111	수 수 쌀	차수수	10 ℓ
10112	밀	참밀	7.5 kg (10ℓ)
10201	쇠 고 기	정육	600 g
10202	돼 지 고 기	정육	600 g
10203	닭 고 기	화이트종(우) 잡아서털뽑은것 1마리정도	1 kg
10301	조 기	생선길이 30 cm정도 (우)	1마리
10302	갈 치	생선몸길이 70 cm정도	1마리
10303	생 명 태	생선길이 45 cm정도 (우)	1마리
10304	고 등 어	생선길이 35 cm정도	1마리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 위
10305	공 치	생선길이 30 cm 정도	10 마리
10306	가 자 미	생선길이 30 cm 정도, 폭 15 cm 정도	1 마리
10307	전 갯 이	생선길이 20 cm 정도	1 마리
10308	병 어	생선길이 25 cm 정도	1 마리
10309	물 오 징 어	생선몸길이 25 cm 정도	10 마리
10310	굴	싱싱한것	375g
10401	굴 비	길이 30 cm 정도 10 마리	1 두름
10402	마 른 멸 치	황백색길이 5 cm 정도	375g
10403	마 른 오 징 어	몸길이 25 cm 정도 (주문진 산)	20 마리
10404	북 어	황태길이 40 cm 정도	1 마리
10405	새 우 젓	추젓 (고봉)	1 l
10406	멸 치 젓	완전히 삭은것	1 l
10501	달 갈	흰색, 상파 개당 50 g 정도	10 개
10502	분 유	서울분유 450 g 들이	1 통
10503	연 유	서울연유 397 g 들이	1 통
10504	목 장 우 유	각 지방 우유협동조합 제품 180cc 들이 (고정배달)	1 병
10601	무 우	재래종, 잎없는것, 3개 정도	3.75kg
10602	배 추	호배추	3.75kg
10603	양 배 추	길쭉질 벗긴것	3.75kg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 위
10604	파	개량파, 머리둘레, 6cm정도	3.75kg
10605	양 파	3개정도	375 g
10606	시 금 치	신선한것	375 g
10607	콩 나 들	길이 5cm정도	375 g
10608	상 치	앞상치	375 g
10609	당 근	2개정도	375 g
10610	오 이	개량종, 애오이, 길이 25cm정도(개당 120g 정도)	10개
10611	호 박	애호박 600g정도	1개
10612	가 지	길이 25cm정도	10개
10613	도 파 도	2개정도	375 g
10614	감 자	흰색 25개정도	3.75kg
10615	고 구 마	15개정도	3.75kg
10701	김	개량김, 점정색	10장
10702	미 역	매장각 (18cm X 19cm정도)(상표지정)	1장
10703	다 시 마	말린것	375 g
10801	고 추	재래종, 완전히 마른것	600 g
10802	고 추 가 루	중가루, (고봉)	0.2 l
10803	마 늘	마른것, 직경 5cm정도	1접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 위
10804	소금(천일염)	국산, 1 등염(고봉)	2 ℓ
10805	"(재계염)	국산, 고운소금(고봉)	2 ℓ
10806	참 개	흰색	1 ℓ
10807	참 기 름	공장제품	0.18ℓ
10808	채 종 유	유채유	0.18ℓ
10809	콩 기 름	해표(동방유량), 프라스틱병 900ml들이 (KS, 표시품)	1 병
10810	들 기 름	공장제품	0.18ℓ
10811	설 탕	백설표(제일제당), 비닐포장 500g들이 (KS, 표시품)	1 포
10812	구루타민산소다	신선로표(미원), 비닐포장 100g들이 (KS, 표시품)	1 포
10813	간 장	샘표(진간장), 900ml들이	1 병
10814	고 추 장	샘표, 비닐포장 500g들이	1 포
10815	생 강	10개정도	375 g
10816	식 초	화영식초, 유리병 100ml들이	1 병
10817	후 추 가 루	캔 포장 400g들이(상표지정)	1 통
10901	두 부	200g정도(공장제품)	1 모
10902	파 면	삼양쇠고기라면, 120g들이	1 봉
10903	국 수	공장제품	375 g
10904	당 면	순녹말	375 g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 위
10905	단 무 지	의무우	375 g
10906	마 야 가 린	소머리표 (서울스노우마아가린) 225 g 들이	1 개
10907	소 시 지	마이소세이지 (진주제품), 비닐포장 100 g 들이	1 개
10908	통조림 (생선)	꽂치통조림, 425 g 들이 (상표지정)	1 통
10909	" (과실)	복숭아통조림, 425 g 들이 (상표지정)	1 통
11001	사 과 (홍옥)	개당 180 g 정도	10 개
11002	" (국광)	개당 200 g 정도	10 개
11003	배	개당 450 g 정도	10 개
11004	복 송 아	백도, 개당 250 g 정도	10 개
11005	포 도	흑갈색	375 g
11006	감	홍시, 개당 150 g 정도	10 개
11007	꽃 감	꽃이당 10 개	1 꽃이
11008	밤	쭈은것 (고봉)	1 l
11009	밀 감	제주산, 개당 100 g 정도	1 개
11010	바 나 나	수입품	375 g
11011	참 의	은천참의 (나이론참의) 개당 600 g 정도	10 개
11012	수 박	개당 5 kg 정도	1 개
11013	딸 기	개량종	375 g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 위
11101	빵 (크림빵)	삼립빵, 비닐포장품, 40 g들이	1 개
11102	" (식 빵)	제과점판매품, 1kg정도	1 개
11103	" (카스텔라)	삼립포, 비닐포장품, 50 g들이	1 개
11104	건 빵	60 g~90 g들이 (상표지정)	1 봉
11105	드 룬 스	해태왕드룬프스, 150 g들이	1 봉
11106	비 스 켓	마미소프트비스켓 (오리온포) 5개들이 (28 g × 5)	1 봉
11107	센 배 이	보통품	375 g
11108	카 라 벨	뉴소프트카라멜 (해태제과), 32 g들이	1 갑
11109	초 콜 릿	해태블랙초콜릿 (28 g)	1 개
11110	검	셀렘민트 (해태제과), 5개들이 (12 g)	1 갑
11111	땅 콩	볶은것, 속껍질있는것 (고봉)	1 l
11112	아이스크림	제과점판매품, 90 cc 정도	1 개
11113	아이스캔디	빙고 아이스바, 60 cc (상표지정)	1 개
11201	콜 라	코카콜라, 190 ml들이	1 병
11202	사 이 다	칠성사이다, 340 ml들이	1 병
11203	쥬 스	오란.씨 (동아제약) 190 ml들이	1 병
11204	코 오 피	다방 판매품	1 잔
11205	홍 차	다방 판매품	1 잔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 위
11206	밀 크	다방 판매품	1 잔
11301	맥 주	오비 640 ml 들이	1 병
11302	소 주	진로, 25도~30도, 360 ml 들이	1 병
11303	청 주	백화수복, 1,800 ml 들이	1 병
11304	약 주	주류판매점 판매품	1.8 l
11305	탁 주	주류판매점 판매품	1.8 l
11306	포 도 주	진로포도주, 360 ml 들이	1 병
11401	곰 탕	1급대중식당	1 그릇
11402	냉 면	1급대중식당	1 그릇
11403	짜 장 면	1급중화요리점	1 그릇
11404	우 동	1급중화요리점	1 그릇
11405	초 밥	1급화식점, 김초밥	1 인분
11406	비 빔 밥	1급대중식당	1 그릇
20101	방 세 (전세)	적벽돌 또는 목조기와집, 부엌있는 온돌방 1개	※
20102	" (월세)	" "	1 개월
20201	도 배 지	벽지, 중절지 3 색도, 두루마리 54 cm X 550 cm	1 필
20202	창 호 지	전주산, 기계지, 표백 (20 장)	1 권
20203	장판지(비닐)	럭키비니루제품, 8 자방 1 칸용, 0.8 mm, 124 cm X 485 cm	1 장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 위
20204	장판지 (종이)	황색 4 배지, 110 cm X 95 cm 정도, 상품 (전주산)	1 장
20205	시 멘 트	일반용, 40kg 들이 (상표지정)	1 포
20206	관 유 리	한국유리공업제품, 투명, 두께 2 mm 1 평	918 cm ²
20207	페 인 트	제비표 (건설화학제품), 흰색, 유광, 외부용 1 급품 4 ℓ 들이	1 통
20208	합 석	별표 (일신산업) # 31 (두께 0.23 mm), 90.9 cm X 181.8 cm 평판	1 장
20209	스 레 이 트	한국스레이트제품, 두께 6 mm, 72.72 cm X 181.8 cm, 석면, 소굴 (11.5) (KS 표시품)	1 장
20301	수 저 (은)	성인용, 70 % 은, 무게 75 g 정도, 젓가락포함 단순무늬	1 벌
20302	" (스타인레스)	성인용, 주물제품, 젓가락포함, 단순무늬	1 벌
20303	스테인레스주발	성인남자용, 대접포함, 단순무늬, 두께 1.5 mm (상표지정)	1 벌
20304	양 은 술	직경 30 cm, 뚜껑제외, (상표지정)	1 개
20305	남 비	황색, 알마이트프레스제품, 직경 18 cm (상표지정)	1 개
20306	접 시	직경 20 cm, 무늬단조, (상표지정)	1 개
20307	컵	유리제품, 1 홈 7 작들이, 보통품 6 개 (상표지정)	1 조
20308	주 전 자	선학표, 황색, 알마이트프레스제품, 2 ℓ 들이 (KS 표시품)	1 개
20309	후 라 이 팬	스테인레스제품, 직경 25 cm 정도	1 개
20310	코오피세트	행남사, 홍장미무늬, 유색, 6 벌, 1 등품	1 조
20311	버 키트	프라스틱제품, 15 ℓ 들이, 뚜껑포함 (상표지정)	1 개
20312	항 아 리	오지, 유광, 손잡이달린것, 뚜껑제외, 40 ℓ 들이	1 개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 위
20313	세숫대야	프라스틱제품, 직경 35 cm, (상표지정)	1 개
20314	시계 (탁상용)	세이코 (구일사제품), 코로나형 (원형)	1 개
20315	" (벽지계)	세이코 (구일사제품) 패중, 4 PC-802 형	1 개
20316	전기 다리미	자동열조정장치 부착 100 V - 150 W - 250 W - 400 W - 500 W (상표지정)	1 대
20317	전구 (백열등)	투명, 100 V - 30 W, 일반조명용, (상표지정)	1 개
20318	" (형광등)	번개표, 주광색, 갓제외, 20 W, 일반조명용 (KS표시품)	1 개
20319	책 상	철강제품, 윗설합1개, 편측설합3개, (910 mm X 610 mm X 760 mm) (상표지정)	1 개
20320	자 전 거	3000 리호, 표준형 (26 인치), 라이트와 거울부착	1 대
20401	텔레비전수상기	금성사제품, TV 83 S, 50.8 cm (20 인치), 트랜지스터부착	1 대
20402	선 풍 기	금성사제품, DH3513H형, 35.56 cm (14 인치)	1 대
20403	냉 장 고	금성사제품, GR - 1640 형, 용량 160 l (540 mm X 600 mm X 1,240 mm)	1 대
20404	라 다 오	금성사제품, RM 800, 휴대용,	1 대
20405	전 축	별표 TR - 4000, 외장은 B 형	1 대
20406	녹 음 기	소니, 모델 TC - 110A (외국산), 휴대용	1 대
20407	믹 서	금성사제품, M - 802 형	1 대
20408	피 아 노	수도피아노, 쉘멜 S - 3A (건반 88 개)	1 대
20409	캐 비 넬	한국제품, 철강계양부장, 양문, 안설합 2 개 (페인트도장) 121 cm X 57.6 cm X 181.8 cm	1 개
20410	재 봉 틀	드레 스미싱, DB 형, 특객실 (무광 테이블)	1 대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 위
20411	석 유 난 로	금성사제품, SR 5060	1대
20412	석 유 곤 로	금성사제품, KC 1510	1대
20501	수도료 (기본)	가정용, 전용전, 월간기본요금포함 10 m ³	10 m ³
20502	" (초과)	가정용, 전용전, 16 m ³ 초과분 (서울, 부산) 기타시 (10 m ³)	16 m ³
20601	청 소 료 (오물수거비)	일반가정, 1등급	1개월
20602	청 소 료 (인분제거비)	일반가정, 18ℓ들이	1 통
20603	숙박료 (호텔)	을류, 독방, 침대, 1인1박, 독탕부설 식 사제의	1 일
20604	" (여관)	1류, 1인1박, 독방, 한식은돌방 식사제의	1 일
20605	전 공 임	숙련공 급식제의	1 일
20606	복 수 임	숙련공 급식제의	1 일
20607	미 장 이 임	숙련공 급식제의	1 일
20608	칠 장 이 임	숙련공 급식제의	1 일
20609	잡 부 임	급식제의	1 일
30101	전 기 료	가정용 (기본요금 및 세금포함)	30 KWH
30201	연 탄	소형, 22공탄, 직매점 판매가격 (배달료 제의), (상표지정)	10 개
30202	가 스	유공제품, 가정용, 프로판가스 (배달료와 통값 제의)	10 kg
30203	숯	참나무 숯, 흑탄	100 g
30301	석 유	유공제품, 등유	2 ℓ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 위
30302	성 냥	가장용대형(덕용), 8각형 450개피들어 (상표지정)	1 통
30303	양 초	6개들어, 갑당 300g 정도(상표지정)	1 갑
40101	마춤신사복 (여름용)	제일모직, 트로피칼(울 50%, 폴리에스터 50%), 인견받침	1 벌
40102	마춤신사복 (겨울용)	제일모직, 순모복지(헤링본) 52 S/2 인견 받침	1 벌
40103	마춤숙녀복 (여름용)	경남모직, 실크스카치가드, 팔없는 원피스, 나이론다후다받침	1 벌
40104	마춤숙녀복 (겨울용)	경남모직, 미라노저지(울 30%, 카시밀론 70%), 두피스, 나이론다후다받침	1 벌
40105	마춤코트	제일모직, 베니손2중직, 남자용, 울 100%, 인조밍크받침	1 벌
40106	마춤오바	경남모직, 여자용순모, 흠빠이루 8 S/2, 기 모, 인견받침	1 벌
40107	한 부	성인여자춘추용, 양고리, 상하 각각 3점 (통시아에 망사집)기성복	1 벌
40108	학생복 (여름용)	남자중학생용, 상의는 TC(65% 폴리에스 터 35%면)청색, 하의는 TR(50% 폴리 에스터, 50%레이온), 기성복 4호	1 벌
40109	학생복 (겨울용)	남자중학생용, TR100%레이온안받침, 기성 복 4호, 흑색	1 벌
40110	아동복	지지미, 반팔원피스, 유색, 기성복 (8~9세용)	1 벌
40111	잠 바	스카이론, 춘추용, 성인남자용, 작크부착 긴 팔, 나이론다후다안받침기성복	1 매
40112	와이셔어츠 (긴팔)	사자표, 시대론PPP(폴리에스터 65%, 면 35%)기성복	1 매
40113	와이셔어츠 (반팔)	사자표, 시대론LP(폴리에스터 65%, 면 35%)기성복	1 매
40114	남방셔어츠	남자성인용, 반소매, 폴리에스터 100%, 유색, 기성복	1 매
40115	내 의(면)	남자성인용, 겨울용상.하, 25 S, 무색, (상표지정)	1 벌
40116	"(화학사)	남자성인용, 겨울용상.하, 무색, 폴리 에스터, 100%, (상표지정)	1 벌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 위
40117	런닝셔츠	남자성인용, 반팔, 38 s, 흰색(상표지정)	1 매
40201	광 목	면 16 s × 16 s, 폭 88.9 cm, 표백안된것 (1마) (상표지정)	91.4 cm
40202	포 플 린	면 30s × 32 폭 91.4 cm, 날염 (상표지정)	91.4 cm
40203	용	면 100% 경사 20 s, 위사 10 s, 폭 36 인치, 양면기모, 백색 (1마) (상표지정)	91.4 cm
40204	나이론태피터	나이론 100%, 70 테니엘, 폭 94 cm, 유색	91.4 cm
40205	실 (재봉사)	면 100%, 30 s/3, 길이 4,500 m, 흰색, (상표지정)	1 권
40206	실 (화학사)	한일합섬, 아크릴 100%, 20 s/2, 편물용, 유색	453.6g
40207	솜	면, 지대포장, 3 kg들이, 흰색, (상표지정)	1 포
40208	이 불	지지미원단, 카시미론솜 6 편 (2 kg정도) 2 인용, (상표지정)	1 장
40301	마춤구두(남자용)	신사용, 복수혁, 나이론창, 나이론굽, 검은 색	1 켤레
40302	" (여자용)	숙녀용, 합성피혁 (크라리노칠피혁), 나이론 창, 플라스틱굽	1 켤레
40303	고무신 (남자용)	말포, 흰색, 260 mm, 9000 백남대 (KS 표시품)	1 켤레
40304	" (여자용)	말포, 흰색, 230 mm, 9000 백여대 (")	1 켤레
40305	운 등 화	말포, 남학생용, 면직, 흑색, 스파이크형, 230 mm	1 켤레
40306	비 신	말포, 남자성인용, 반장화, 흑색고무제품 260 mm	1 켤레
40401	양말 (남자용)	성인용, 추동용, 나이론 20%, 면 80%, 단색 (상표지정)	1 켤레
40402	" (여자용)	추동용, 나이론 100%, 단색, (상표지정)	1 켤레
40403	" (아동용)	추동용, 카바양말, 나이론 100%, 단색 (8~9 세용) (상표지정)	1 켤레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 위
40404	스 타 킹	반달표, 살색, 8분(무늬, 뒷줄없음), 나이론 100%	1 켤레
40405	장 갑	면사 23 S, 흰색, 작업용, 중품	1 켤레
40406	백 타 이	동아견직, 폴리에스터 100%, 최신형	1 매
40407	마 플 러	남자성인용, 본건, 40 S 단사, (110 cm X 30 cm), 중품	1 매
40408	모 자	중고교생용, 울 70%, 나이론 30%, 방모사 나이론안반침, PVC채	1 개
40409	가 방	남자중학생용, 100% PVC, 면접착(스폰 지식)	1 개
40410	모 포	한일합섬제품, 일반용 (2.1 m X 1.4 m), 위 사는 카시미론 100%, 경사는 면 100%, 줄무늬	1 매
40411	수 건	타올, 면 23 S, 80 cm X 32 cm 정도, 유색 (상표지정)	1 매
40412	우 산	협립제품, 흙살 10개, 2단, 나이론다후다, 검은색	1 개
40413	양 산	협립제품, 흙살 10개, 2단, 나이론다후다 유색	1 개
40414	손 목 시 제	오리엔트 19식, 남자용, 카렌다형, 방수수 동태엽, 스테인레스케이스, 국내조립품	1 개
40415	금 반 지	순금(99%), 3.75g, 무늬단조(수공임 포함)	1 개
40416	핸 드 백	비닐제품, 미혼여성용, 최신중형, 보통장식, 단색(상표지정)	1 개
40417	안 경	남자보안용, 국산테(세루로이드 6mm), 국산알(슈퍼젤), 갈색	1 개
40501	세 탁 비 (양 부)	신사복상, 하, 드라이크닝(다림질포함)	1 회
40502	세 탁 비 (와이셔어즈)	메드론제품(다림질포함)	1 회
40503	재 봉 료	부인용, 춘추용한복(화학사웃감, 3겹) 수공임	1 벌
40504	의복수선료	신사복, 짜집기, 3cm정도	1 회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 위
40505	신 수 선 료	남자구두 1 켤레, 뒷창수선료(재료값제외)	1 회
40506	구 두 닦 이	남자용단화, 검정색, 보통광택	1 회
50101	영 양 제	비타민(유유산업), 100정들이	1 병
50102	감 기 약	노바킹당의정(동광약품), 10정들이	1 병
50103	소 화 제	부채포활명수(동화약품), 60ml들이	1 병
50104	항 생 제	테트라사이클린(중근당제약) 250 mg	10캡슐
50105	해 독 강 장 제	박카스D (동아제약), 100 cc들이	1 병
50106	구 충 제	비페라(중근당제약) 12정들이	1 병
50107	외 상 약	마큐롬액, 15 cc들이	1 병
50108	진 찰 료	종합병원, 보통초진료	1 회
50109	입 원 료	종합병원, 일반환자 2등(식사포함, 약대제외)	1 일
50110	분 만 료	종합병원, 2등, 2박3일입원, 경산, 정상분만(식사포함, 약대제외)	1 회
50111	엑 스 - 레 이 촬 영 료	종합병원, 흉부, 직접, 보통, 단순촬영(14인치×14인치)	1 회
50201	비 누(화장)	코티벌꿀비누 8,000번(동산유지)	1 개
50202	" (세탁)	일판가정용, 2호 350g, (장표지정)	1 개
50203	" (가루)	럭키하이타이, 비닐포장 100g들이	1 포
50204	치 약	럭키치약, 100g들이(중형)	1 개
50205	칫 솔	럭키 뉴 777, 성인용(케이스포함)	1 개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 위
50206	화 장 크 림	오스카바니싱크림, 50 g 들이	1 갑
50207	화 장 분	오스카 밀크파운데이션 (태평양화학제품) 35 g 들이	1 갑
50208	화 장 수	오스카듀스킨로손, 145 cc 들이	1 병
50209	포 마 드	오스카향수포마드, 60 g 들이	1 갑
50210	화 장 지	장미표 1 번 (원통형), 흰색	1 개
50211	살 충 제	에프킬러에어로졸 (삼성제약), 수압분무식 300 ml 들이	1 통
50212	이 용 료	성인 (착유포함), 종류	1 회
50213	미 용 료(고데)	성인여자 (가발·샴프로제의), 종류	1 회
50214	" (파마)	성인여자, 보통파마 (체리파마약), 종류	1 회
50215	목 욕 료(성인)	남자, 일반대중탕	1 회
50216	" (아동)	일반대중탕 (7세이하)	1 회
50301	버 스 료(좌석)	성인, 시내 1 구간	1 회
50302	" (일반)	성인, 시내 1 구간	1 회
50303	" (고속)	서울-부산간, 성인, 편도	1 회
50304	택 시 료(기본)	시내, 기본요금 (2 km)	1 회
50305	" (초과)	2 km 초과요금	1 회
50306	기 차 료(완행)	대인, 40 km	1 회
50307	" (급행)	대인, 보통급행, 40 km	1 회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 위
50308	항 공 료	대한항공, 서울 부산간, 성인, 편도	1 회
50309	선 박 료	국내, 여객운임, 성인, 3 등실, 20 해리	1 회
50401	전화료 (기본)	가정용 1 대, 시내통화료	1개월
50402	" (도수)	가정용, 시내통화료 200 회	200 회
50403	우 편 료	국내, 필서봉서, 20 g 이내	1 통
50404	전 보 료	시외, 보통, 10 자이내	1 회
50405	소 포 료	국내, 6 kg까지	1 개
50501	교 과 서 (국민학교)	4학년 1학기용, 국어, 산수, 사생, 자연	4 권
50502	교 과 서 (중학교)	영어 (중1, 유니온) 수학 (중1, 현대중학 수학-이성현 저)	2 권
50503	교 과 서 (고등학교)	영어 (고1 유니온), 수학 (고1, 현대공 통수학-이성현 저)	2 권
50504	국 민 학 교 비 육 성 회 비	가구당 1 인, 재학생분	1 분기
50505	남 입 금 (공 중)	2학년생	1 분기
50506	남 입 금 (사 중)	2학년생	1 분기
50507	남 입 금 (공 고)	2학년생	1 분기
50508	남 입 금 (사 고)	2학년생	1 분기
50509	남 입 금 (국 대)	종합대학 또는 단과대학문과계 3학년생	1 학기
50510	남 입 금 (사 대)	종합대학 또는 단과대학문과계 3학년생	1 학기
50511	남 입 금 (전 문)	4학년생, 기계과	1 학기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 위
50512	유 치 원 비	보육료 및 기성회비	1개월
50513	참 고 서	옛센스영한사전 (민중서관), 3×6 판, 인도지, 비닐표지, 1, 680페이지	1권
50514	학원비(입시)	대학입시준비 영어단과반 1일 100분강의 보통강사수강료	1개월
50515	학 원 비 (자 동 차)	지정자동차학원, 본과영업반8주과정 수강료 (입학금, 책값, 면허수수료제외)	1개월
50516	학 원 비 (양 원 재)	재단과, 4개월과정 수강료 (입학금제외)	1개월
50517	도 서 관 비 (국 공 립)	성인, 일반 열람실	1회
50518	도 서 관 비 (사 설)	학생, 일반 열람실	1일
50601	볼 펜	모나미 153, 청남색, KS표시품	1개
50602	연 필	동아연필 HB1000, 향나무(지우제부착), KS표시품	1다스
50603	만 년 필	파일롯트 E형 (W400)	1개
50604	노 트 (대)	모조지 24매 (표지포함), 18.6cm×26.5cm (상표지정)	1권
50605	" (소)	갱지 16매 (표지포함), 14.5cm×20.5cm (상표지정)	1권
50606	도 화 지	마니라지 (45.4kg) 1면사용, 수채화용, 8절지	1장
50607	시 험 지	갱지 16절지	20매
50608	봉 투	모조지제품, 홀봉투, 흰색	10장
50609	크 레 파 스	모나미 왕자표, 굵은파스 (6cm정도) 22색 들이	1갑
50610	잉 크	청색, 파일롯트잉크, 30cc 들이	1병
50701	신 문 구 독 료	동아일보, 가정배달	1개월

품목번호	품목명	품질규격	단위
50702	주간지	주간한국, 32면	1부
50703	월간지 (여성지)	주부생활(당월분)	1권
50704	월간지 (대중지)	아리랑(당월분)	1권
50705	월간지 (아동지)	소년중앙(당월분)	1권
50706	월간지 (종합지)	신동아(당월분)	1권
50707	월간지 (문예지)	현대문학(당월분)	1권
50708	영화관람료 (영화)	충천연색, 상영시간 100분정도, 입장세포함 (각종구호금제외)	1회
50709	영화관람료 (외화)	"	1회
50710	텔레비전 시청료	1대	1개월
50711	고궁입장료	고궁 및 유원지, 성인	1회
50712	사진	명함판, 흑백색 3~4매(상류사진판)	1조
50713	필름	코닥, 폭 35mm, 20장촬영용, 국내제본	1통
50714	장난감	유색, 고무공, 직경 18cm정도	1개
50715	삼륜자전거	어린이 4~5세용, 1인용, 보통장식	1대
50716	운동기구	축구볼, 보급용(중양구), 소가죽 32피	1개
50717	레코트판	LP형, 지름 27cm, 스트레오, 국내 일류 가수신곡최신취입	1장
50801	담배(한강)	12개들이(필터)	1갑
50802	담배(청자)	20개들이(필터)	1갑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 위
50803	담 배(신탄진)	20개들이(필터)	1갑
50804	" (악고대)	"	1갑
50805	" (스포츠)	6개들이(필터)	1갑
50806	" (듬 판)	20개들이(필터)	1갑
50807	" (아리랑)	"	1갑
50808	" (희 망)	10개들이(필터)	1갑
50809	" (백 조)	20개들이	1갑
50810	" (금잔디)	"	1갑
50901	행정 수수료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초본 발급	1통
50902	행정 수수료 (호적초본)	호적초본 발급	1통
50903	행정 수수료 (인감증명)	인감증명원 발급	1통
50904	행정 수수료 (병적증명서)	병적증명서 발급	1통

부록 2 .

조사상 문제 품목의 참고사항

조사상 문제품목의 참고사항 2

쌀~ 상품과 중품을 명확히 구별하여야 하며 대상처 별로 등급이 상이한 경우에는 가격제열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동일품질 규격을 조사할 것.

어개류~ 생선의 길이에 상당하는 무게를 알아 두었다가 중량 단위로 판매하는 대상처의 올바른 가격을 포착 할 것이며 길이가 다른 경우에는 중량을 중심으로 가격을 환산할 것.

목장우유~ 협동조합에서 고정적으로 배달하여 주는 가격을 조사하여야 하며 제과점이나 일반점포에서 판매하는 가격을 조사하여서는 안된다.

미역~ 지역별 산지별로 가격이 상이하니 반드시 규격을 확인한 후에 조사할 것.

마늘~ 규격에 맞는 적당 무게를 확인하여 조사할 것.

예전대 3.75kg(1관) 단위로 판매되는 경우 적당 무게를 파악하고 있어야 환산이 가능함.

꽃감~ 반드시 꽃이로 되어 있는 것을 조사할 것이며 짙으로 묶어서 포장한 것을 조사해서는 안된다.

과자류~ 항상 상표와 중량을 확인하여 조사할 것이며 특히 검량에 유의하여 그 사유 및 가격을 정확히 조사 보고 하여야 한다.

밀크~ 목장 우유와는 구별되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약주~ 용기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므로 병술을 조사 하여서는 안된다.

방세~ 방세조사의 대상은 방이므로 가구주의 변동이 있어도 대상처는 변동되지 않으며, 세의 종류가 변경되어도 대상가구를 변동하여서는 안된다.

예전대 동일한 방에 A가 전출하고 B가 전입한 경우나, 전세가 월세

(보증부월세, 삭월세, 월세)로 변경되어도 대상치는 변동되지 않으며 변동된 사실을 그대로 기입하여 보고한다.

즉 A가 전세로 200,000원에 세들어 있다가 전출하고 B가 250,000원에 전세 입주하면, 조사표에는 가구주 성명을 B로 기입하고 50,000원 인상된 것으로 보고 동락사유란에 A가 전출하고 B가 전입한 사실을 기입하며, 200,000원 전세로 있던 A가 보증금 100,000원에 월세 5,000원으로 보증부월세로 변경되었다면, 전분기는 전세 200,000원으로 기입하고, 금분기에는 보증부월세란에 보증금 100,000원 매월 지불액 5,000원으로 기입하고 동락사유란에 세의 종류변경을 기입하여야 한다.

수도료~ 가정용은 1972년부터 초과사용량에 대하여는 누진율을 적용하므로 요금환산에 유의하여야 한다.

서울의 경우를 예시하면, 인상전에는 기본수량 10㎡에 기본요금 80원, 초과사용량 1㎡당 10월으로 기본료 80원, 초과료 160원(10원×16㎡)이었으나, 인상후에는 기본료가 10㎡에 150원, 초과사용료는 11~20㎡의 경우 1㎡당 15원, 21~30㎡의 경우 1㎡당 20원이므로 기본료는 150원, 초과료는 270원(15원×10㎡+20원×6㎡)이 된다.

또한 수리비, 시설비, 기타, 영선료 부과징수는 제외된다.

오물수거비~ 전방별로 1등급(월수입, 재산세, 건평등 택일)을 명확히 파악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호텔료~ 율류란 외국인이나 주로 투숙하는 관광호텔이 아니고 내국인이 주로 투숙하는 호텔을 말한다.

연탄~ 가정용 소형 구멍탄으로서 적매점 점두가격을 조사한다.

배달료는 거리의 원근 및 위치에 따라 다르므로 조사가격에서는 제외된다.

남자구두~ 복수혁이과 합은 인조합성 피혁이 아닌 우피를 말하며 기성

화를 조사하여서는 안된다.

비신~ 단추나 작크가 부착되지 않은 반장화를 조사하여야 한다.

손목시계~ 남자용 오리엔트 19석으로서 요일과 날자가 나오는 것으로 (카렌다 형)수동이며 국내 조립품을 조사한다.

금반지~ 순도(99%)를 유지하며, 수공임을 포함하므로 단순한 무늬가 있는 것을 조사하여야 하며 특히 수공임의 변동에 유의하여야 한다.

피복류~ 피복 및 장신구는 유행에 민감하므로 특히 상표, 원료의 성분(수, 데니엘, 혼방의 경우 혼합비율등) 색채, 형태 등에 항상 유의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수(手)와 데니엘(Denier)은 실의 굵기를 표시하는 것으로 수는 면직, 모직물에, 데니엘은 생사, 나일론 직물에 사용된다.

수(S)~면직물의 경우는 원면 1파운드(453.6g)로 길이 840야드(YDS)의 실을 뽑았을 때의 실의 굵기를 말하며, 모직물의 경우는 1kg의 원모로 1,000m의 실을 뽑았을 때의 실의 굵기를 말한다.

데니엘~ 나일론 섬유 1g으로 9,000m의 실을 뽑았을 때의 굵기를 말하며, 생사 450m 무게가 0.05g일 때 1데니엘이라 한다.

진찰료~ 전문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에서 보통 초진료를 조사한다.

따라서 특진료, 새진료를 조사해서는 안된다. 이하 입원료, 분만료, 엑스레이 촬영료도 같은 종합병원에서 조사하여야 한다.

입원료~ 일반환자란 응급의 특수진료를 요하는 환자가 아니며, 병원에서 일률적으로 배급하는 식사는 포함하지 병원에서 별도로 계산하는 약값은 제외한다.

분만료~ 경산이란 초산이 아닌 것을 말하며, 정상분만이란 특수진료를

요하지 않은 경우이고 따라서 특별히 투입되는 약값은 제외되며, 다만 지혈제등 분만료와 별도로 계산되지 않고 모든 산모에게 일률적으로 투입되는 약값은 분리 포착하기가 곤란하므로 제외되지 않는다.

또한 2박 3일 입원이란 정상적인 산전 산후 처리 기간이므로 그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입원료는 당연히 제외되어야 한다.

간혹 전문병원에 따라서는 남아, 여아의 분만료에 차등을 두는 경우가 있으나 종합병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차등을 두지 않으며, 만일 차등을 두는 경우가 있다면 남아분만에 대한 산모측의 팀으로 간주하며 따라서 그 차액은 고려될 수가 없다.

이용료~ 중류라 함은 관광호텔등의 특수 이발소가 아닌 일반 이발소를 말하며, 보통의 착유를 포함하며 특수 서어비스(손톱손질, 맛사아지등)로 인한 팀은 해당 업소가 이용료에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고려될 수 없다. 이하 미용료도 같다.

목욕료~ 터키탕, 사우나독크등 특수 목욕탕이 아닌 일반매중탕을 조사대상으로 남자 목욕료를 조사하는데, 특히 아동의 경우 7세이하를 기준으로 하나, 지방에 따라 성인, 아동, 유아를 각각 구별하는 경우에는 기준에 가장 가까운 요금을 조사한다.

예컨대 13세이상을 성인, 6~12세까지가 아동, 5세이하가 유아로 구분되면 유아의 목욕료를 조사하며, 10세이상을 성인, 5~9세까지가 아동, 4세이하가 유아이면 아동의 목욕료를 조사한다.

부 록 3.

가 격 조 사 표 (2)

조사일자	가	격	등락사유	가	격	등락사유	가	격	등락사유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지정통제
제 13 호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조사지역()
조사구번호()
조사원명()

소매가격표

197 년 월 일 현재

품목번호	품목명	단위	진기가격 (A)	공기가격 (B)	차 (B-A)	분락사유	비고
10101	쌀(일반미)	8 kg (10ℓ)					
10102	쌀(밤줄미)	8 kg (10ℓ)					
10103	참쌀	8 kg (10ℓ)					
10104	보리쌀(정맥)	7.5kg (10ℓ)					
10105	보피쌀(입맥)	1 포					
10106	콩	7.5kg (10ℓ)					
10107	팥	8.33kg (10ℓ)					
10108	녹두	8.33kg (10ℓ)					
10109	좁쌀	7.68kg (10ℓ)					
10110	밀가루	1 포					

품목번호	품목명	단위	진기가격 (A)	곰기가격 (B)	차 (B-A)	등락사유	비고
10111	수수알	7.83kg (10ℓ)					
10112	일	7.5kg (10ℓ)					
10201	쇠고기	600g					
10202	돼지고기	600g					
10203	닭고기	1kg					
10301	조기	1마리					
10302	갈치	1마리					
10303	생명배	1마리					
10304	고등어	1마리					
10305	꽂	10마리					
10306	가자미	1마리					
10307	진쟁이	1마리					
10308	병어	1마리					

10309	물오징어	10마리						
10310	굴	375g						
10401	굴	1투름						
10402	마른멸치	375g						
10403	마른오징어	20마리						
10404	복어	1마리						
10405	새우젓	1ℓ						
10406	멸치젓	1ℓ						
10501	달걀	10개						
10502	분유	1통						
10503	연유	1통						
10504	목장우유	1병						

품목번호	품목명	단위	진기가격 (A)	금기가격 (B)	차 (B-A)	등록사유	비고
10601	무우	3.75kg					
10602	배추	3.75kg					
10603	양배추	3.75kg					
10604	파	3.75kg					
10605	양파	375g					
10606	시금치	375g					
10607	콩나물	375g					
10608	상치	375g					
10609	당근	375g					
10610	오이	10개					
10611	호박	1개					
10612	가지	10개					
10613	도마도	375g					
10614	감자	3.75kg					
10615	고구마	3.75kg					

10701	김	10장							
10702	미역	1장							
10703	다시마	375g							
10801	고추	600g							
10802	고춧가루	0.2ℓ							
10803	마늘	1점							
10804	소금(천일염)	2ℓ							
10805	소금(계염)	2ℓ							
10806	참깨	1ℓ							
10807	참기름	0.18ℓ							
10808	채종류	0.18ℓ							
10809	콩기름	1병							
10810	들기름	0.18ℓ							
10811	설탕	1포							

품목번호	품목명	단위	진기가격 (A)	금기가격 (B)	차 (B-A)	등락사유	비고
10812	구루타민산소다	1포					
10813	간장	1병					
10814	고추장	1통					
10815	생강	375g					
10816	식초	1병					
10817	후춧가루	1통					
10901	두부	1포					
10902	라면	1봉					
10903	국수	375g					
10904	라면	375g					
10905	단무지	375g					
10906	마아가린	1개					
10907	소시지	1개					

110908	통조림 (생선)	1 통							
110909	통조림 (과실)	1 통							
111001	사과 (홍옥)	10개							
111002	사과 (극광)	10개							
111003	배	10개							
111004	복숭아	10개							
111005	포도	375g							
111006	감	10개							
111007	꽃감	1꽃이							
111008	밤	1ℓ							
111009	밀감	1개							
111010	파나박	375g							
111011	참외	10개							
111012	수박	1개							

품목번호	품목명	단위	진기가격 (A)	금기가격 (B)	차 (B-A)	동락사유	비고
111013	딸기	375g					
111101	빵(크림빵)	1개					
111102	빵(식빵)	1개					
111103	빵(키스멜라)	1개					
111104	진빵	1봉					
111105	드롭스	1봉					
111106	비스킷	1봉					
111107	센베이	375g					
111108	카라멜	1갑					
111109	초콜릿	1개					
111110	걸	1갑					
111111	망종	10					
111112	아이스크림	1개					

11113	아이스캔디	1개							
11201	콜라	1병							
11202	사이다	1병							
11203	쥬스	1병							
11204	코오피	1잔							
11205	홍차	1잔							
11206	밀크	1잔							
11301	백주	1병							
11302	소주	1병							
11303	청주	1병							
11304	약	주 1.8g							
11305	타	주 1.8g							
11306	포도	주 1병							
11401	곰탕	1그릇							

품목번호	품목명	단위	진가가격 (A)	금가가격 (B)	차 (B-A)	등	락	사	유	비	고
11402	병	1그릇									
11403	짜장면	1그릇									
11404	우동	1그릇									
11405	초밥	1인분									
11406	미림밥	1그릇									
20101	방세(전세)	6개월									
20102	방세(월세)	1개월									
20201	도배지	1필									
20202	창호지	1권									
20203	장판지(비닐)	1장									
20204	장판지(종이)	1장									
20205	시멘트	1포									
20206	판유리	918cm									

품목번호	품목명	단위	진기가격 (A)	금기가격 (B)	차 (B-A)	통	락	사	유	비	고
20312	항아리	1개									
20313	세숫대야	1개									
20314	시계 (탁상용)	1개									
20315	시계 (벽시계)	1개									
20316	전기다리미	1대									
20317	전구 (백열등)	1개									
20318	전구 (형광등)	1개									
20319	책상	1개									
20320	라전거	1대									
20401	텔레비전수상기	1대									
20402	선종기	1대									
20403	냉장고	1대									
20404	라디오	1대									

품목번호	품목명	단위	진가가격 (A)	금가가격 (B)	차 (B-A)	등락사유	비고
20605	진공임	1 일					
20606	복수임	1 일					
20607	미장이암	1 일					
20608	칠장이암	1 일					
20609	잡부임	1 일					
30101	전기료	30KWH					
30201	연탄	10개					
30202	가스	10kg					
30203	숫	100g					
30301	석유	2 l					
30302	석남	1 통					
30303	양초	1 갑					
40101	미출신사복 (여름용)	1 벌					

40102	마춤신사복 (겨울용)	1벌							
40103	마춤숙녀복 (여름용)	1벌							
40104	마춤숙녀복 (겨울용)	1벌							
40105	마춤코트	1벌							
40106	마춤오바	1벌							
40107	한복	1벌							
40108	학생복 (여름용)	1벌							
40109	학생복 (겨울용)	1벌							
40110	아동복	1벌							
40111	잠바	1매							
40112	와이셔어플 (긴팔)	1매							
40113	와이셔어플 (짧팔)	1매							
40114	남방셔어플	1매							
40115	내의(면)	1벌							

품목번호	품목명	단위	진기가격 (A)	금기가격 (B)	차 (B-A)	등	락	사	유	비	고
40116	내의(화합사)	1 벌									
40117	링닝셔어츠	1 매									
40201	광목	91.4cm									
40202	포플린	39.4cm									
40203	웅	91.4cm									
40204	나이론 태피터	91.4cm									
40205	실 (재봉사)	1 권									
40206	실 (화합사)	453.6 g									
40207	숨	1 포									
40208	이발	1 장									
40301	마춤구두 (남자용)	1 켤레									
40302	마춤구두 (여자용)	1 켤레									
40303	꿈마춤구두 (남자용)	1 켤레									

40304	고 무 신 (여 자 용)	1	월						
40305	운 동 화	1	월						
40306	비 신	1	월						
40401	양 말 (남 자 용)	1	월						
40402	양 말 (여 자 용)	1	월						
40403	양 말 (아 동 용)	1	월						
40404	스 타 킹	1	월						
40405	강 감	1	월						
40406	백 타 이	1	매						
40407	마 물 러	1	매						
40408	모 자	1	개						
40409	가 방	1	개						
40410	모 포	1	매						
40411	수 건	1	매						

품목번호	품목명	단위	진기가격 (A)	금기가격 (B)	차 (B-A)	등 확 사 유	비 고
40412	우산	1개					
40413	양산	1개					
40414	손목시계	1개					
40415	금반지	1개					
40416	핸드백	1개					
40417	안경	1개					
40501	채택비(양복)	1회					
40502	채택비(와이셔츠)	1회					
40503	제봉료	1벌					
40504	의복수선료	1회					
40505	신수선료	1회					
40506	구두담이	1회					
50101	영양제	1명					
50102	감기약	1명					

50103	소 화 제	1 명							
50104	항 생 제	10캡슐							
50105	해독강장제	1 병							
50106	구 충 제	1 병							
50107	최 상 약	1 병							
50108	진 찰 료	1 회							
50109	입 린 료	1 일							
50110	분 만 료	1 회							
50111	엑스레이촬영료	1 회							
50201	비 누(회장)	1 개							
50202	비 누(세탁)	1 개							
50203	비 누(가루)	1 포							
50204	치 약	1 개							
50205	치 술	1 개							

품목번호	품목명	단위	진기가격 (A)	급기가격 (B)	차 (B-A)	등락사유	비고
50206	화장크림	1갑					
50207	화장분	1갑					
50208	화장수	1병					
50209	포마드	1갑					
50210	화장지	1개					
50211	살충제	1통					
50212	이용료	1회					
50213	이용료(교대)	1회					
50214	이용료(피마)	1회					
50215	목욕료(성인)	1회					
50216	목욕료(아동)	1회					
50301	버스료(좌석)	1회					
50302	버스료(일박)	1회					
50303	버스료(고속)	1회					

50304	텍서로 (기본)	1 회							
50305	텍서로 (초과)	1 회							
50306	기차로 (완행)	1 회							
50307	기차로 (급행)	1 회							
50308	항 공 료	1 회							
50309	선 박 료	1 회							
50401	전화로 (기본)	1개월							
50402	전화로 (도수)	1개월							
50403	우 편 료	1 통							
50404	전 보 료	1 회							
50405	소 포 료	1 개							
50501	교 과 서 (국민학교)	4 권							
50502	교 과 서 (중학교)	2 권							
50503	교 과 서 (고등학교)	2 권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진가가격 (A)	금가가격 (B)	차 (B-A)	등	락	사	유	비· 고
50504	국립박물관	1분기								
50505	납입금(공중)	1분기								
50506	납입금(사중)	1분기								
50507	납입금(공교)	1분기								
50508	납입금(사교)	1분기								
50509	납입금(국매)	1학기								
50510	납입금(사매)	1학기								
50511	납입금(전문)	1학기								
50512	유치원비	1개월								
50513	참고서	1권								
50514	학원비(입시)	1개월								
50515	학원비(자동차)	1개월								
50516	학원비(양재)	1개월								

50517	도서 판 비 (국공립)	1 회							
50518	도서 판 비(사설)	1 일							
50601	불	1 개							
50602	연	1 다스							
50603	만	1 개							
50604	노	1 권							
50605	노	1 권							
50606	도	1 장							
50607	시	20 매							
50608	봉	10 장							
50609	크	1 갑							
50610	인	1 병							
50701	신문구독료	1 개월							
50702	주	1 부							

품목번호	품목명	단위	전기가가격 (A)	합기가격 (B)	차 (B-A)	등락사유	비고
50703	월간지(여성지)	1 권					
50704	월간지(대중지)	1 권					
50705	월간지(아동지)	1 권					
50706	월간지(종합지)	1 권					
50707	월간지(문예지)	1 권					
50708	영화관촬록 (영화관촬회)	1 회					
50709	영화관촬록 (외화관촬회)	1 회					
50710	텔레비전시청료	1개월					
50711	교공임장료	1 회					
50712	사 진	1 조					
50713	필 름	1 통					
50714	장 난 감	1 개					
50715	삼륜자전거	1 대					

50716	운동기구	1개							
50717	헤코드판	1장							
50801	담배(환장)	1갑							
50802	담배(청자)	1갑							
50803	담배(신택진)	1갑							
50804	담배(코코타)	1갑							
50805	담배(스포르츠)	1갑							
50806	담배(금관)	1갑							
50807	담배(이리갈)	1갑							
50808	담배(희망)	1갑							
50809	담배(백조)	1갑							
50810	담배(금전터)	1갑							
50901	행진수수문 (주인명호문)	1봉							
50902	행진수수문 (호적호문)	1봉							

품목번호	품목명	단위	전기가가격 (A)	합기가격 (B)	차 (B-A)	등락사유	비고
50903	형정수수로 (인감증명)	1 통					
50904	형정수수로 (병적증명서)	1 통					

※ 불가동항 및 참고사항

방 세 조 사 표

시 도 구 시 동 경 계 기 획 원 조 사 통 계 국
 조사구번호 () 지 도 원 ㉠
 조사가구번호 () 가 구 주 성 명 () 조 사 원 ㉡

품 질 규 격		적벽돌 또는 목조기와집 부엌있는 온돌방 1개						등록사유
종 류	전 월	보 증 금		매 월 지 불 액		※		
		전 분 기 일	금 분 기 일	전 분 기 일	금 분 기 일	전 분 기 일	금 분 기 일	
전	세							
월	보증부월세							
	삭월세							
세	월 세							

※란은 기입하지 말것

조사요령

- 방세조사는 매분기 말월 5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가계조사원이 가계조사 대상가구에서 보조 조사시에 동시 조사한다.
- 방세조사 대상가구는 가계조사 가구중에서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가구가 대상이 된다.
 ※ 방세조사대상-가계조사가구가 전세나 월세로 들어있을경우에 주택건물이 적벽돌 또는 목조기와집 (철근콘크리트집, 초가등제외) 으로서 부엌있는 온돌방 1개 (방2개 이상이나 온채 전세는 제외), 1칸 내지 2칸 정도의 (6자X6자 ~ 8자X9자) 크기가 대상이 된다.
 단 부엌은 가설부엌도 포함한다.
- 전세는 보증금만 기입한다.
- 보증부 월세는 보증금을 내어놓고 이와는 별도로 매월 월세를 지불하는것을 말하는데 보증금과 매월 지불액을 각각 기입한다.
- 삭월세는 보증금에서 매월 월세를 공제하는것을 말하는데 보증금란에는 매월 공제된 나머지 보증금만 기입하고 매월 지불액란에는 매월공제액을 기입한다.
- 월세는 보증금 없이 매월 지불되는 방세를 말한다.
- 가계조사 대상가구가 변동되더라도 본부의 지시가 없는한 이미 조사하고 있던 방세조사 대상가구를 조사원이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시 도	구 시	조사구번호
--------	--------	-------

방세조사 대상가구 명부

지도원 ①

조사원 ②

작성일자		년 월 일			조사원	
대상 일련번호	가구 주성명	주	소	비	고	

구 시	조사구번호
--------	-------

방세조사대상가구변동 (신규·폐지) 보고서 지도원 ㉡
 변동일자 년 월 일 조사원 ㉢

대상 일련번호	가 구 주 성 명	주 소	변동 (신규, 폐지) 사유

지정통계 제13호

영화판람료조사표

197 구 지도원 ①
 시 도 시 조사원 ②

품 구 장 명	※영화 영구 관 분	영 화 명	상 영 일 자	요 금 화 분	
				부 터	까 지
		총치연액 1시간 40분 정도(뉴스, 선진제외) 입장세를포함 (단, 각종구호금 제외)			

※ 기 입 요 령

- 1. 품질 규격에 맞는 영화요금만 기입한다.
- 2. 전월 6일부터 금월 5일까지 기간중 상영한 해당영화
- 3. 동시 상영하는 영화도 조사한다.
- 4. 영화관 구분만에는 개봉관 재개봉관을 명기할것

경 제 기 획 원 조 사 통 제 국

지정통제 제 13 호

국민학교납입금확인서

시 도

구 시

지정통제 제 13 호 국
지정통제 제 13 호 국
지정통제 제 13 호 국
지정통제 제 13 호 국

학 교 유 성 회 비	1/4		2/4		3/4		4/4		비 고
	등급	금액	등급	금액	등급	금액	등급	금액	
	A		A		A		A		
	B		B		B		B		
	C		C		C		C		
	D		D		D		D		
	E		E		E		E		
	※가중평균액		※가중평균액		※가중평균액		※가중평균액		※연간총액

위와 같이 확인함

197 년 월 일

기입요령

학교장

인

1. 본조사는 매분기 말월 5일을 조사 시점으로 하여 실시한다.
2. 월별 학기별 혹은 년간으로 징수할지는 분기별로 환산하여 기입한다.
3. 서울 부산을 제외한 지역은 0란을 기입치 않고 사선(/)을 긋는다.
4. ※포란 (가중평균액란, 연간총액란)은 기입치 않는다.
5. 조사하는 분기나 이미 조사된 분기는 징수한 금액, 아직 징수하지 않은 분기는 징수예정금액을 기입한다.
6. 징수액이 전분기 조사금액에 비하여 변동이 있을시 (예 : 추가징수)는 그 사유를 기재한다.
7. 금액란에는 각등급별 1인당 징수액만을 기입한다.
8. 본조사는 필히 피조사 학교장의 확인을 요한다.

공	사	립	구	분	공	·	사
인	문	·	실	업	인	문	·
실	업	교	교	교	교	교	교

중, 고등학교 납입금확인서

지정통계 제 13호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
지도원 ㉠
조사원 ㉡

시도 구시

비목기별 수업료 실험실습비 자율적경비 총계	연간총액 1/4	2/4		3/4		4/4		비고
		금액	동급 %	금액	동급 %	금액	동급 %	
학교육상회비	※	동급 %		동급 %		동급 %		
		A		A		A		
		B		B		B		
※합계		※가평균액		※가평균액		※가평균액		

위와 같이 확인함

197년 월 일

기입요령

학교장 ㉢

1. 본조서는 매분기 말월 5일을 조사시점으로 하여 실시한다.
2. 조사하는 분기나 이미 조사된 분기는 징수한 금액을, 아직 징수하지 않은 분기는 징수예정금액을 기입한다.
3. 징수액이 전분기 조사금액에 비하여 변동이 있을 시 (예: 추가징수)는 그 사유를 기재한다.
4. 학교 육성회비 금액란에는 각 등급별 1/1인당 징수액만 기입한다.
5. ※표시란 (학교육상회비, 연간총액, 가중평균액, 합계란)은 기입치 않는다.
6. 3기분으로 나누어 징수할 시는 사유를 비교란에 기입한다.
7. 본조사 내용은 필히 피조사 학교장의 확인을 요한다.

공·사 학·과	명	공·사 과
------------	---	----------

대학, 전문학교 납입금 확인서

지정통계 제 13 호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
지도원 ㉠
조사원 ㉡

시 도 구 시

비목	기별	연간총액	1 학 기	2 학 기	비 고
수	입				
기	성 회 비				
실	험 실 습 비				
자	을 적 경 비				
계					

위와 같이 확인함

197 년 월 일 학교장 ㉢

기입요령

1. 국문과 3년생, 또는 국문과가 없는 경우는 문과계 3년생의 납입금을 조사하고 그 학과를 명시한다.
2. 전문학교는 기계과 4년생의 납입금을 조사한다.
3. 본 조사는 매학기 첫달 3, 9월 5일을 조사시점으로 하여 실시한다.
4. 조사하는 학기나 이미 조사된 학기는 정수한 금액을, 아직 정수하지 않은 학기는 정수에정금액을 기입한다.
5. 정수액이 전분기 조사금액에 비하여 변동이 있을시 (예: 추가정수)는 그 사유를 기재한다.
6. 초급대학, 교육대학은 대상처에서 제외한다.
7. 본 조사의 내용은 필히 피조사 학교장의 확인을 요한다.

지정상품일람표

조사구

197

품	목	별	상	포	제	조	회	사	비	고

전도시 소매불가조사

지도원 ①

지정상표변동보고서

조사원 ①

조사구

동 변 년 월 일	품 목 명	품 질 규 격	기 존 상 표	대 체 할 상 표	변 경 사 유	신·구가격		고 비 고
						신	구	

진도시 소재 불가조사
 품질규격변동보고서 지도원

조사구

조사구 년월일	품 목 명	구 품 질 규 격	신 품 질 규 격	신 품 질 규 격	변 경 사 유	신, 구가적 신/구		비 고
						신	구	

전도시소매물가조사

조사구

지도원 ㉔
조사원 ㉕

조사대상처 변동보고서

변동 년월일	변동전			의대		상처		신 주 소	대		상		적 신,구가격 신/구	전화번호
	대상처명	품목명	대체사유	대상처명	주 소	대표자성명	신,구가격 신/구		신,구가격 신/구	전화번호				

전도시 소매물가조사질의응신서

조사구

다음과 같이 지적하니 재 조사하여 즉시 보고할것 197

품목명	진가가격 월 일	금가가격 월 일	지적 사 항	재조사 가 격	지적대응에대한응신

위와 같이 재 조사 보고함

197

지도원
조사원

대 상 처 별 조 사 품 목

일 번 호	대 상 처 명	사 업 주	주 소	조 사 품 목	품 목 수	비 고 (전 화)

조 사 품 목 별 대 상 처

일련 번호	품 목 명	대상처명	사 업 주	주 주	소	비고 (진화)

지 시 사 항

수 신

발 신 물 가 통 계 과 장

일 자 197

다음 사항을 지시하니 내용에 유의하여 접수 즉시 조치할것 .

